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 128호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창원시 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창원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안 제2조제1호)
- 나.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4항 및 제8조5항)
- 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에서 설치 위치를 삭제함(안 제10조)
- 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시 수요·공급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6조제1항~제2항)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6,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jemhwa@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선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57
----------	-----

발의연월일 : 2023. 11. 17.

발 의 의 원 : 박선애 · 구점득 · 김경희 · 김남수 · 김상현
김수혜 · 남재욱 · 서명일 · 성보빈 · 이종화
최정훈 · 홍용채 의원(12명)

1.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창원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안 제2조제1호)
- 나.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4항 및 제8조5항)
- 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에서 설치 위치를 삭제함(안 제10조)
- 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시 수요·공급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6조제1항~제2항)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나. 관계 법령
- 다. 현행 조례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6세 미만”을 “7세 이하”로 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보육관련 전문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위원장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신청자에게 운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 제목 “(설치 및 위치)”를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 “(설치)”를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영 제19조의2제2항제2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보육수요와 공급현황을 조사하여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 반영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영유아”란 <u>6세 미만의</u>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p> <p>2. ~ 5.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보육정책위원회</p>	<p>제2조(정의) ----- -----.</p> <p>1. ----- <u>7세 이하</u> ----- -----.</p> <p>2. ~ 5.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보육정책위원회</p>
<p>제5조(구성) ① ~ ③ (생 략) <u><신 설></u></p>	<p>제5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보육관련 전문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u></p>
<p>제8조(회의) ① ~ ④ (생 략) <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p>	<p>제8조(회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위원장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신청자에게 운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p>
<p>제10조(설치 및 위치) ① (생 략) <u>② 센터는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20번길 11(가음동) 여성회관</u></p>	<p>제10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p>

창원관 내에 둔다.

제4장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설치) (생략)

<신설>

제4장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설치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장은 영 제19조의2제2항제2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보육
수요와 공급현황을 조사하여 제4
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 반영
해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임차 등 사용계약을 통하여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3. 8. 13., 2017. 3. 14., 2018. 12. 24., 2023. 8. 16.>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2018. 12. 24.>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4., 2020. 12. 29.>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정원 및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 3. 2.>

■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해야 한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4조(설치 등)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창원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2. 어린이집 평가 및 우수 어린이집 지정
3.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제5조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가 사임을 원한 경우
4. 제5조제2항에 해당하여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제10조(설치 및 위치) ① 시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는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20번길 11(가음동) 여성회관창원관 내에 둔다.

제11조(기능) 센터는 보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2.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며, 필요할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임면한다.

③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대표가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의 제청으로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삭제

제13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보육 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3.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5.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보육관련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제14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를 영 제26조의2제

1항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 4. 삭제

제15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삭제

제4장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설치) 시장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제1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이나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영 제21조에서 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개인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9조(계약의 체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위·수탁 계약을 문서로 체결해야 한다.

제20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제한)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보육관련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위탁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삭제

제2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계약에서 정한 사항과 시장의 지도·감독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국공립어린이집 및 수입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다시 빌려주는 것은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5.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제22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20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
4. 위탁받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운영평가) ① 시장은 해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보조금 지원, 위·수탁계약의 해지, 재위탁 여부 등에 반영하고, 우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제24조(임면) ①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하고 14일 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창원시가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시장이 임면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의 보육교직원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 제11조 제3항의 기준에 따른다.

③ 시장 및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원장은 보육교사 면직 시 시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1. 보육아동 수 감소 또는 예산 사정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 2. 해당 보육교직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 3. 그 밖에 직무태만, 아동학대 행위 등으로 보육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25조(전보) 시장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계약에 따른다.

제26조(임기)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는 원장이 보육교사로 근무할 것을 원할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보육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제27조 삭제

제28조 삭제

제29조(보수 및 퇴직금) 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운용·관리해야 한다.

제30조(교육)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보조금의 지급 등

제31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보육관련 행사 비용
3. 보육교직원 교육·연수 등에 필요한 비용
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
5.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부담비용 중 국고보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비용을 보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보육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

는 경우

2.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결산 및 사업 계획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3. 평가인증 또는 인성교육이 우수하거나 취약보육을 제공하는 경우

③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어린이집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2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 4. 삭제

제7장 어린이집의 지도 및 감독

제33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34조(보고·검사) 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 조사 및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제8장 보칙

제35조(준용) ① 보육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보건복지부 및 경상남도 「보육사업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6조(운영규정)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